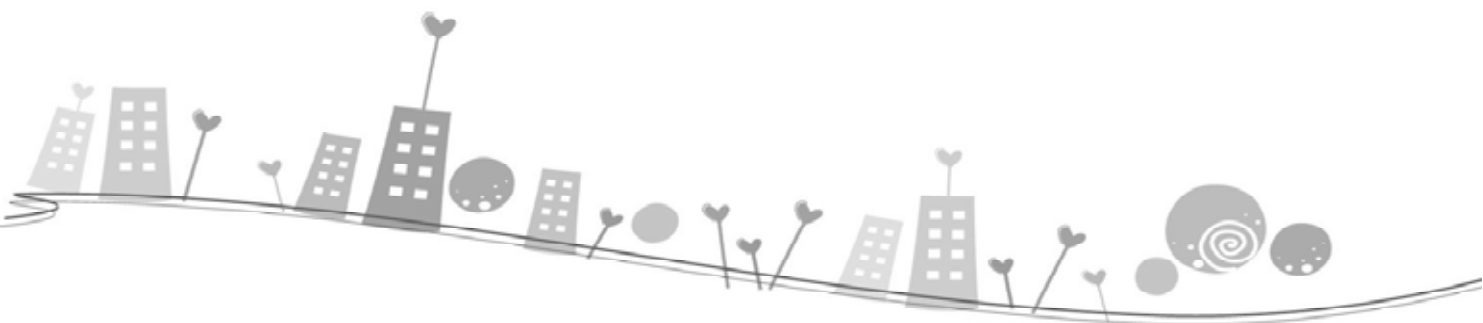


**시설·공간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가이드라인
- 성평등과 안전**

차례 CONTENTS

I. 젠더와 안전	3
1. 성평등 이슈로서 안전성	5
2. 안전의 성별 특성 및 요구	12
II.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별 컨설팅	21
1.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	23
2. 사업 유형별 컨설팅 주요내용	24
III. 시설·공간별 안전 컨설팅 가이드라인	37
1. 주차장	39
2. 화장실	42
3. 공원	44
4. 건축물	46
IV.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컨설팅 참고사항	55
1. 컨설팅 시점의 고려	57
2. 기초자료로서 성별 통계의 구축	58
3. 컨설팅 대상 사업으로 안전 분야의 확대	58
참고문헌	59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안내서 개요

일반적으로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안전 사업은 공간이용안전, 범죄안전, 보행 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폭력안전 등 안전 논의의 대상 및 범위, 접근 방식 등에서 매우 다양하고 다층적임.

성인지적인 관점의 적용은 모든 안전 사업에서 요구되나, 선행연구의 부족과 성별 통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성별연관성을 드러내고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아직 한계를 지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사업에 다양한 안전 분야의 사업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시설·공간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양한 성별영향분석평가들은 도시·건축공간의 안전성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 왔으며, 지역에 따라 시설·공간 사업들은 안전 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함. 실질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다루어지는 안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설·공간사업임.

그러나 도시·건축 관련 분야가 성중립적인 분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건축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성별연관성을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종종 있어 왔음. 또한, 그동안 도시·건축 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되어 온 다양한 안전 관련 정책개선안들의 공유가 미흡하여, 지역마다 분석평가서 컨설팅 및 개선안 도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안전성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시설·공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험 공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다루어졌던 시설·공간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 연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시설·공간 사업의 안전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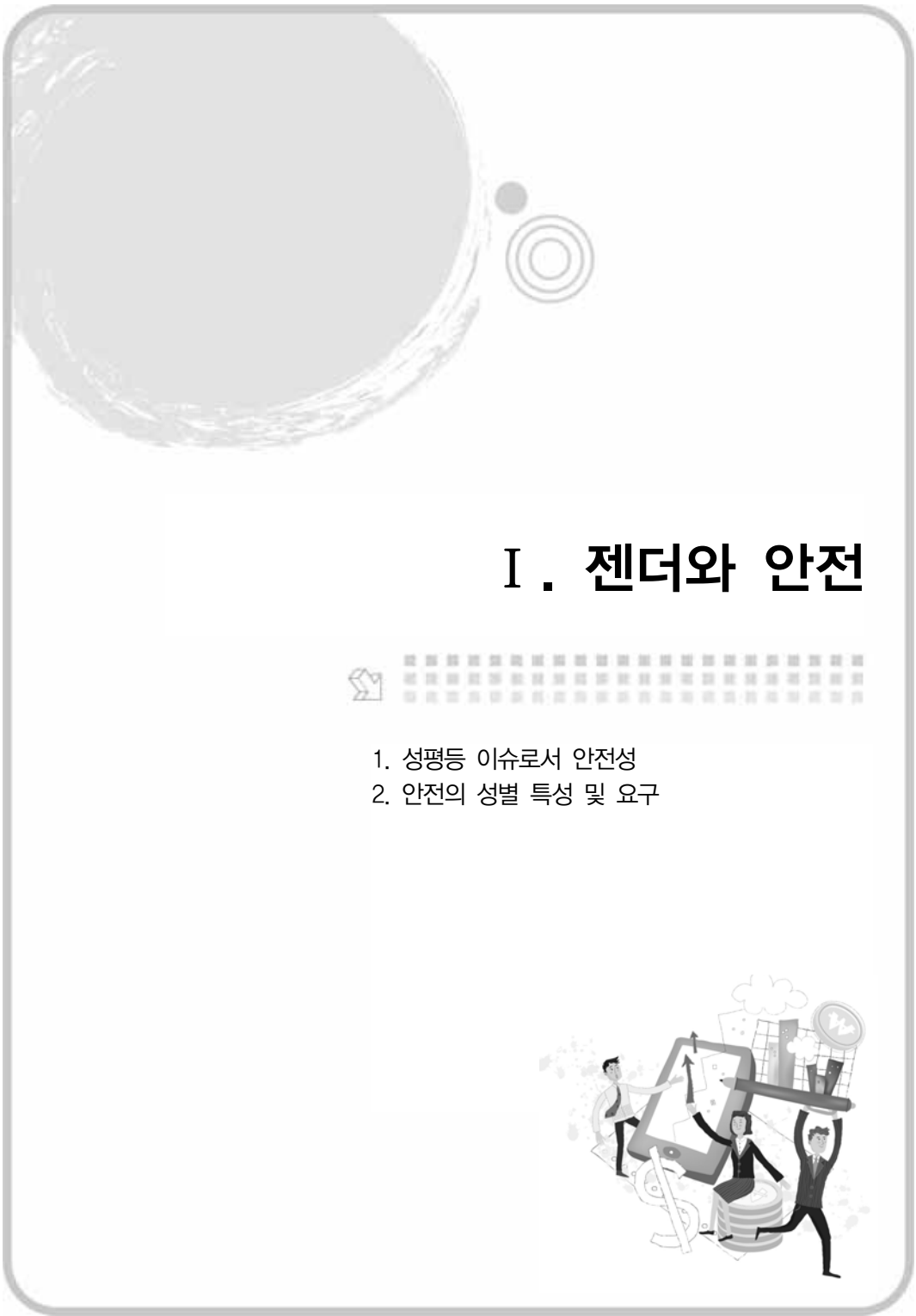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시설·공간 사업의 컨설팅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컨설턴트들이 시설·공간 사업의 안전성 이슈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컨설팅에

필요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공간이용안전, 범죄안전, 재난안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설·공간 사업의 컨설팅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

다만, 시설·공간 사업에서 직접 다루어지지 않는 안전 교육, 인력 양성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 가이드라인은 I장 젠더와 안전, II장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별 컨설팅, III장 시설·공간별 안전 컨설팅 가이드라인, IV장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컨설팅 개선방향으로 구분됨.

구 분	내 용
I. 젠더와 안전	<p>I장은 시설·공간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컨설팅에서 요구되는 ‘성평등 이슈로서 안전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임. 안전성과 도시공간이용에 대한 성평등 이슈임을 도출하고, 도시공간이용과 연관된 안전에 대한 성별 특성과 요구를 제시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이슈로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 ▶ 공간이용의 안전취약자가 되는 상황 검토 ▶ 여성과 남성의 공간이용 특성 검토 ▶ 공간조성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필요성 도출
II.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별 컨설팅	<p>II장은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을 안전의 분야에 따라 살펴보고, 사업 유형별로 컨설팅이 요구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임. 공간이용안전이 추가되는 사업, 범죄안전이 추가 되는 사업, 공간이용안전과 범죄안전이 모두 고려되는 사업, 재난안전이 추가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음.</p>
III. 시설·공간별 안전 컨설팅 가이드라인	<p>III장은 시설·공간별로 적용이 가능한 안전성과 관련된 시설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빈도가 높은 시설·공간인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의 시설 기준을 다룸.</p> <p>이 가이드라인은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도출되었으며, 컨설팅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p>
IV.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컨설팅 추진방향	<p>IV장은 시설·공간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제시함.</p> <p>시설·공간사업의 절차와 컨설팅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시설·공간사업 및 일반적인 안전정책의 성별 통계 부족, 컨설팅 대상 안전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 컨설팅 시 고민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함.</p>



I . 젠더와 안전



- 1. 성평등 이슈로서 안전성
- 2. 안전의 성별 특성 및 요구



I . 젠더와 안전

1 성평등 이슈로서 안전성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y)란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별, 연령, 인종, 수입, 능력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내의 환경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임. 안전한 지역사회 내에서 ① 통계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② 거주하는 동네나 도시가 점차 안전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며, ③ 사람들이 이웃을 알고 있고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④ 경찰, 공공공간 유지, 대중교통, 시의회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⑤ 시민들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며, ⑥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관하게 됨. (Dame, T. and Grant, S., 2002; 장미혜 외, 2013 재인용)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한 도시·건축공간이란 도시의 모든 사람들, 즉 성별, 연령, 계층, 신체적 조건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해 도시·건축공간을 두려움 없이 이동, 접근, 점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장미현, 2015)

도시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훨씬 크게 체감되는 문제이며, 도시공간의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낌.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들은 도시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 장소, 이용 시간, 이동 수단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안전성의 문제가 여성들의 도시공간 이용을 제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안전성은 도시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의 확보는 공간 성형평성의 중요한 이슈가 됨.(남수현 외, 2014)

가. 안전 체감도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로 차이가 있음. 범죄위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불안(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남성은 58.4%, 여성은 7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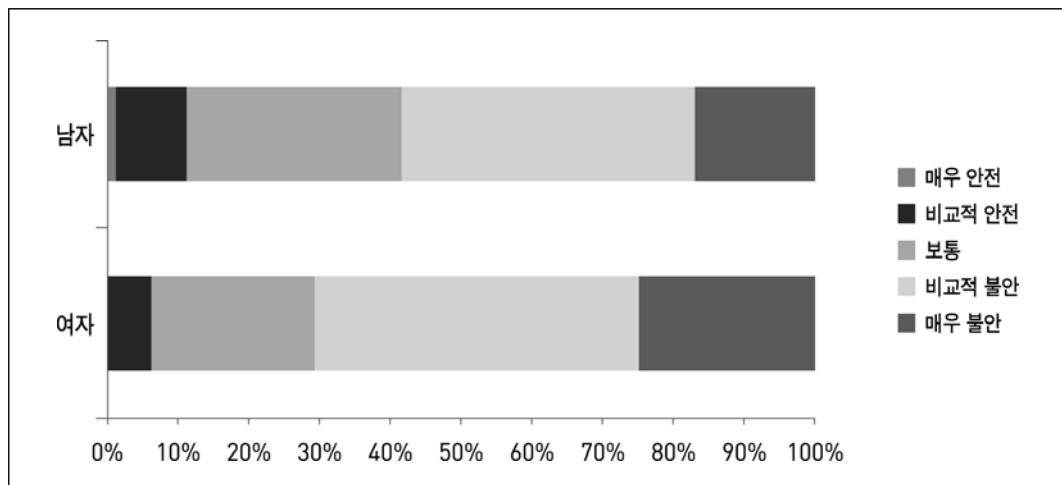
Ⅰ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위험,13세 이상 인구)_2014년 Ⅰ

단위: %

특성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계
남자	1.2	10.3	30.2	41.6	16.8	100.0
여자	0.5	5.9	23.1	45.8	24.7	100.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Ⅰ 성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위험,13세 이상 인구)_2014년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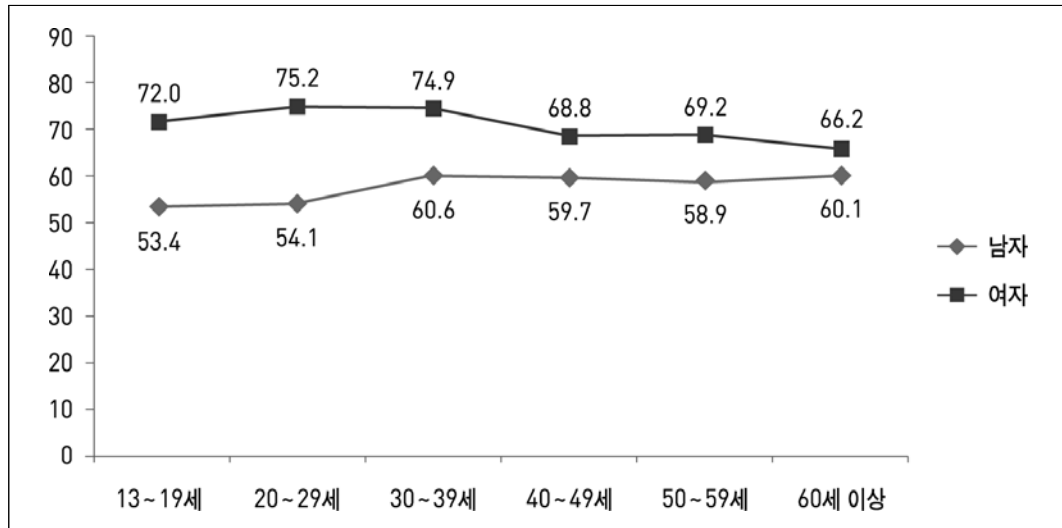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은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연령대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은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여성은 40대 이후 범죄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지만, 남성은 30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 20대, 30대, 13~19세 순으로 높고, 성별 격차는 20대, 13~19세, 30대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특히 10대~30대 연령대의 여성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Ⅰ 성별, 연령별 불안감(비교적 불안+매우 불안)_2014년 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① 야간보행의 안전도

야간보행의 경우 범죄위험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통계임. 야간 보행 시 두려운 장소가 있다는 남성은 29.1%, 여성은 55.5%로 격차를 보임.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인적이 드물어서’,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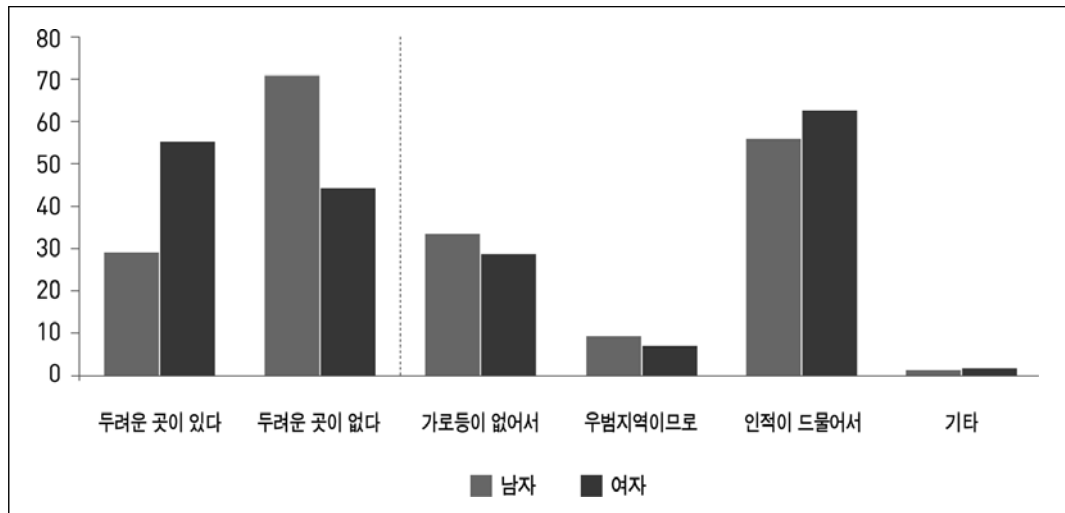
Ⅰ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13세 이상 인구)_2014년 Ⅰ

(단위: %)

특성별	두려운 장소 여부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			
	두려운 곳이 있다	두려운 곳이 없다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남자	29.1	70.9	33.5	9.4	55.8	1.3
여자	55.5	44.5	28.8	7.0	62.4	1.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Ⅰ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13세 이상 인구)_2014년 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대상지역 선정 시 지역 여성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우범지역이나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은 객관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사항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음. 마을이나 동네의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전문가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됨. 특히,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지역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여성들의 의견 반영이 요구됨.

②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아래 표)을 살펴보면 남성은 ‘그냥 다닌다’의 비율이 65.2%이며, 여성은 43.7%임. 이 외에 여성들이 많이 나타내는 특성은 ‘낮이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피해 다닌다’, ‘차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순으로 모두 남성보다 높은 비율임.

여성들은 대부분 야간에 불안한 장소를 ‘회피’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안전하지 못한 공간은 여성들의 이동 시간, 이동 경로, 이동 수단을 바꾸고, 혼자서 이동하는 것을 꺼리게 만듦. 안전성의 취약은 여성의 공간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결국, 안전성이 취약한 공간은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공간이 됨.(장미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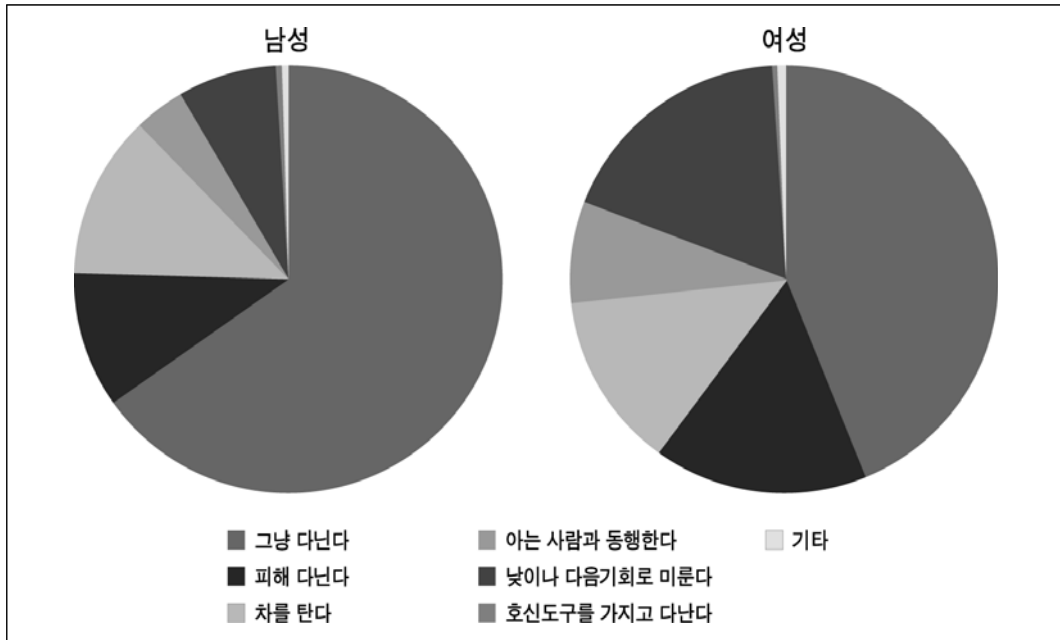
Ⅰ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_2014년 Ⅰ

단위: %

특성별	계	그냥 다닌다	피해 다닌다	차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이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계	100.0	50.9	14.4	12.8	6.3	14.7	0.3	0.6
남자	100.0	65.2	10.2	12.4	3.8	7.6	0.3	0.4
여자	100.0	43.7	16.5	13.0	7.6	18.2	0.2	0.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Ⅰ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_2014년 Ⅰ



☞ 안전성은 공간이용의 주요한 젠더 이슈가 됨.

안전성은 여성들의 평등한 공간이용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공간이용의 주요한 젠더 이슈임.

나. 안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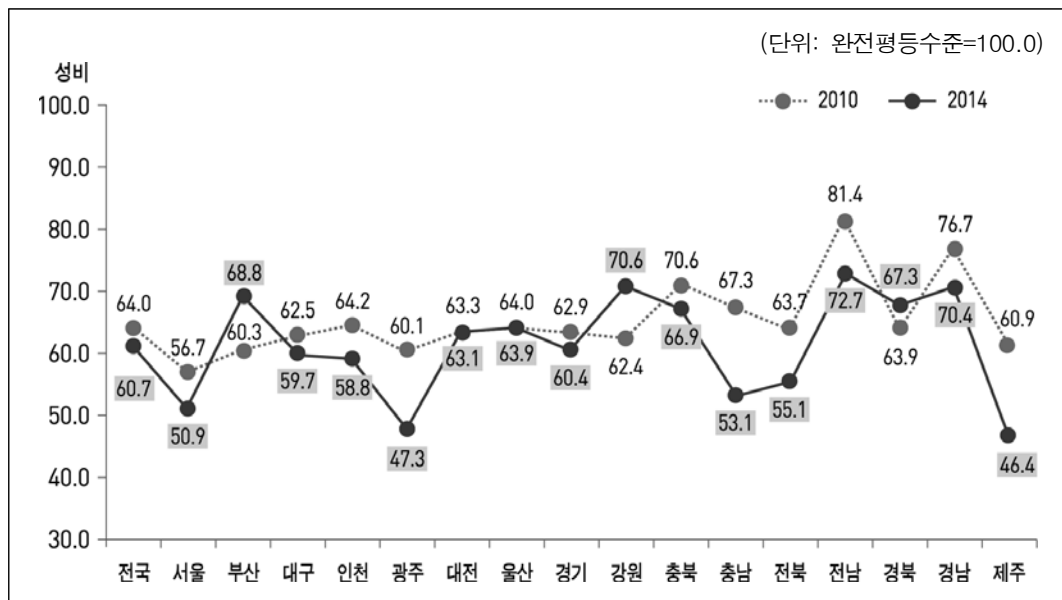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한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그 기능 중 하나는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선정 시에 지역의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음.

지역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대 분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서 지역성평등지수의 한 분야임.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의 두 지표로 측정되는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시·도별 차이와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남.

2014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순이며, 낮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순임.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성평등 수준의 개선 정도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순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었음. (주재선 외, 2015)

Ⅰ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 Ⅰ



출처: 주재선 외, 2015

☞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의 활용

대상과제로 안전사업을 선정하거나, 안전사업의 개선안 및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지역별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를 활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안전사업은 여성을 안전취약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 전체를 안전취약 집단으로 표현할 경우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위치시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여성 전체를 하나의 인구집단으로서 약자로 여기기보다, 여성들의 공간 이용 방식에 따라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가. 여성의 돌봄 역할과 시설·공간 이용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보행약자에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행특성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목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및 무거운 짐을 든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기 사용자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강현미 외, 2008)

보행약자들은 통행특성(표4)에 따라 다양한 이동장애 요소들과 부딪히게 됨.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동안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돌봄대상자 동반 이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의 돌봄대상자를 동반하는 비율이 높고, 유모차의 이용도 많음. 이 경우, 돌봄대상자가 지닌 보행약자로서의 이동 특성을 공유하게 됨. 따라서 시설·공간사업에서 여성의 공간이용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공간이용특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

이는 여성에 비해 비율은 낮으나 남성이 돌봄대상자를 동반하여 보행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대상자를 동반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됨.

Ⅰ 보행약자의 통행특성 및 이동장애 요소 Ⅰ

그룹	통행특성	이동장애 요소
휠체어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지에서 이동은 용이하나 단차가 있는 곳을 올라가기 힘들 •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지 못함 • 도랑에 caster(휠체어의 작은 바퀴)가 빠지면 움직이지 못함 • 노면의 요철, 자갈길은 이동이 곤란하고, 진흙길은 통행불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의 턱 • 건물출입구 단차 • 계단, 육교 • 보차비분리 도로 • 불량한 노면상태 • 협소한 보도폭 • 경사면
목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및 경사면의 수직이동이 힘들 • 넘어지기 쉽고 보행능력이 약함 • 보행속도가 느림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인 경우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 경사면 • 불량한 노면상태 • 보차비분리 도로 • 협소한 보도폭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폭의 축소와 단위시간당 보행수 저하로 장시간 보행이 어려움 • 경사면과 계단에서 보행의 불편을 느낌. 뒤에서 오는 차량의 접근 및 경음기에 주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이 높은 계단, 청결상태 불량 계단, 경사면 • 보차비분리 도로 • 불량한 노면상태
임산부, 어린이 및 무거운 짐을 든 보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한 상황에서의 이동이 곤란함 • 무거운 화물을 들지 못함 • 어린이는 눈의 위치가 낮고 장시간 보행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한 보도폭 • 보차비분리 도로
유모차, 보행보조기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등의 구직이동이 힘들 • 심한 경사면에서 불편함을 느낌 • 단차 있는 곳을 올라가기 힘들 • 노면의 요철, 자갈길은 이동이 곤란 • 진흙길은 통행불능 • 장시간 보행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 경사면 • 단차 • 보도의 턱 • 협소한 보도폭

출처: 강현미 외, 2008

나. 이동 패턴의 성별 특성

여성과 남성은 다른 생활 방식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공간 사용에는 차이가 있음. 대표적인 공간 이용 방식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비율

통근통학을 하지 않거나 통근통학을 하더라도 거주읍·면·동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를 의미함. 38개 도시의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여성은 64.1%, 남성은 57.6%로 여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러한 경향은 도시규모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남. 이는 주간에 거주지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음.

Ⅰ 현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사람 비율(12세 이상) Ⅰ

단위: %, 도시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통근통학 안함	거주 읍면동 통근통학	통근통학 안함	거주 읍면동 통근통학	통근통학 안함	거주 읍면동 통근통학
합계	평균	32.5	33.6	21.4	36.2	42.9	31.2
	사례 수	38	38	38	38	38	38
대도시	평균	33.0	26.9	22.1	28.7	43.1	25.2
	사례 수	16	16	16	16	16	16
중도시	평균	30.5	30.7	18.2	32.2	42.4	29.2
	사례 수	10	10	10	10	10	10
소도시	평균	33.4	45.0	23.2	49.4	43.2	40.8
	사례 수	12	12	12	12	12	12
F		2,628*	25,817***	5,266*	27,116***	0,171	23,738***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년 원자료 재구성. 최유진 외, 201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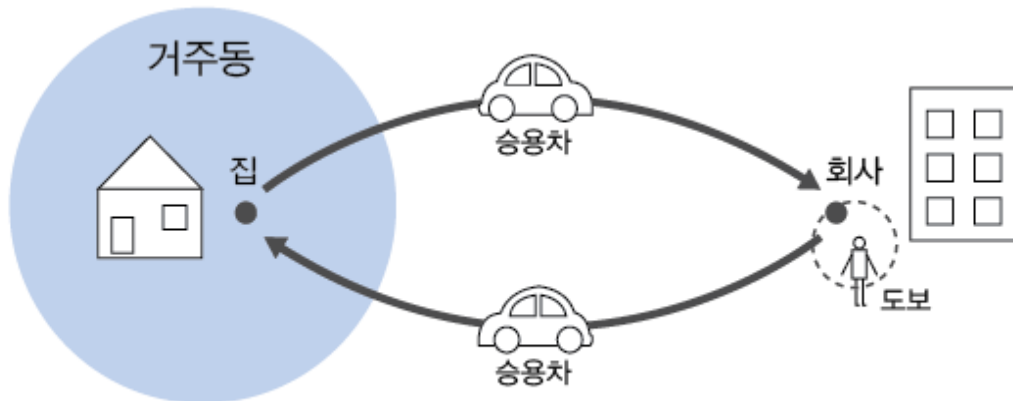
② 성별 이동 특성

취업 남성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는 여성보다 많고, 승용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취업여성의 이동은 남성의 이동과 다르게 원거리 직장의 경우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사 및 돌봄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까지의 주된 이동수단 중 특징적인 것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승용차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임. 이와 같은 이동 특징은 아동 동반 이동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음. 돌봄대상자를 동반한 이동이나, 대중교통시스템의 이용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이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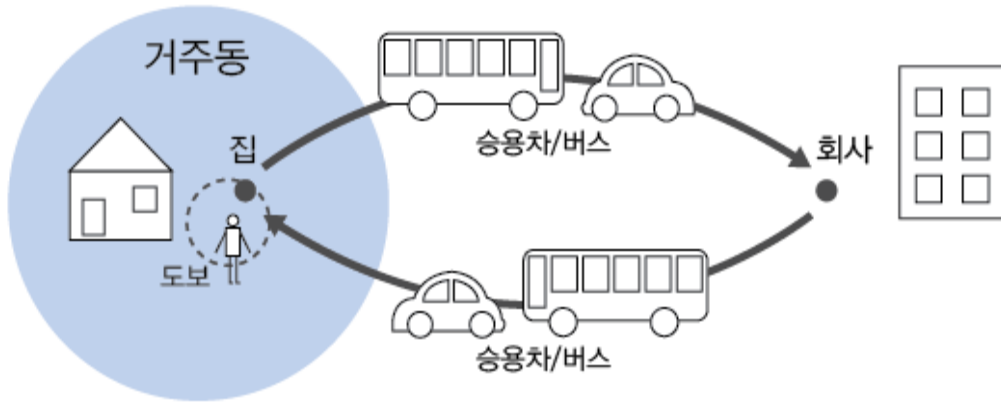
또한 저소득 계층일수록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음에도, 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거 및 일터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다시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을 통한 이동 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으로 이어짐.(최유진 외, 2013)

Ⅰ 남성의 이동 패턴 Ⅰ



출처: 최유진 외, 2013

Ⅰ 취업 여성의 이동 패턴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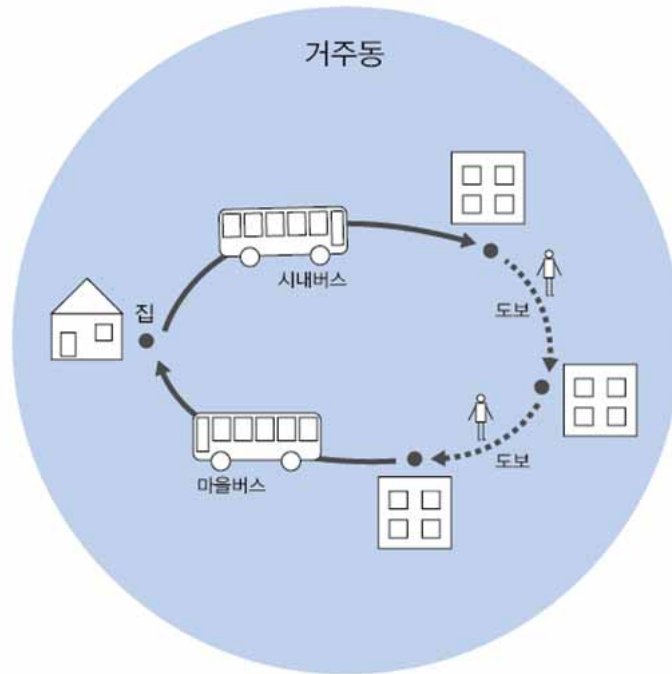


출처: 최유진 외, 2013

반면, 전업 주부의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이 많으며, 보행, 마을버스와 버스의 이용률이 높음. 여성들은 가사와 돌봄 활동의 시간이 남성보다 많고, 일상에서 가사와 돌봄 서비스 시설의 이용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이루어짐. 여성들의 이동은 집-돌봄시설, 돌봄시설-쇼핑, 쇼핑-아동학습, 아동학습-병원, 병원-집 등 가사와 돌봄을 위한 단편적 이동이 비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지님.(손문금 외, 2013; 최유진 외, 2013)

영유아 및 아동 동반 이동이 많은 공간에 대해, 유모차 이용 등을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설계가 함께 요구됨. 일상생활에서 방문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 주요 근린생활시설 주변,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주거까지의 주 보행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

Ⅰ 전업 주부의 이동 패턴 Ⅰ



출처: 최유진 외, 2013

☞ 여성의 이동 특성에 따른 안전성 향상의 모색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선택, 이동거리 및 이동 시간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이동 특성은 여성에게 치중된 돌봄의 책임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함.(장미현, 2013)

여성들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연계가 중요함. 여성들의 공간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이나 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방문하거나 머무르는 장소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정거장, 주차장 등의 이동 관련 시설과 보행공간의 안전성 확보가 모색되어야 함.

마을이나 골목길 등의 안전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주거지에 이르는 주 보행로 등 여성들의 주요 이동 공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등 돌봄대상자 동반 이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보행 등 이동 환경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접근 가능한 비상벨이나 인터폰 등 도움요청설비, CCTV, 조도 확보 등이 필요함.

※ 영유아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한 공간 이용 고려는 돌봄에 대한 성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경험하는 공간이용에서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강함. 그러나 여성과 돌봄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컨설팅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함.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환경, 돌봄에 대한 공간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함.

(ex)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음

다. 공간조성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시설이나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성별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의사가 시설 및 공간 조성 계획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

시설이나 공간계획 관련 분야는 여성의 비율이 낮은 분야로, 전공 선택, 직업 선택에 대한 성별분리가 나타나는 분야임.¹⁾ 도시나 건축 공간의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전공 및 직업 선택의 성별 분리가 누적되어 온 결과로 인해 공무원, 교수, 설계자 등 관련 전문가의 비율은 여전히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의사결정의 상위 단계일수록 남성의 비율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관련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0%에 못 미치고 있음.

시설·공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성별 특성과 요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함. 관련 전문가의 여성 비율 향상과 더불어 젠더와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전문가를 발굴하는 것도 함께 필요함.

또한 일상적인 공간에서 경험하는 안전성의 문제는 실질적인 공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1) 남학생은 공학계에서 8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193

☞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고른 참여,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방안 마련

건축위원회, 도시설계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공간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의 성별 고른 참여, 성인지 전문가의 자문 활용이 요구됨.

지역 주민들의 안전 관련 성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의사수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Ⅱ.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별 컨설팅



1.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
2. 사업 유형별 컨설팅 주요 내용



Ⅱ.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별 컨설팅

1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

시설·공간 사업에서 다루어지는 안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공간이용 안전,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간이용안전 : 다양한 이용자들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공간의 물리적 안전성 (안전한 재료, 경사, 유효폭 등)의 확보에 대한 내용임. 무장애공간 설계 (Barrier Free)의 적용, 아동, 고령자,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시설 설치가 포함됨.

* 무장애공간설계(BF :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의미함. 지역 환경이나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개별시설이 대상이 됨.²⁾ 도시 및 건축공간을 이용하는데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의 계획단계부터 장애물을 만들지 않거나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용함.

- 범죄안전 :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예방환경 설계의 적용, 방법 시설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 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또는 변경 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낮추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 됨.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원리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시, 접근 통제, 공동체 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활동성 증대(activity support), 명료성 강화(legibility),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의 6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됨. (김재민 외, 201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

- 재난안전 : 하천 정비,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주로 재해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2015년 광역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시설 및 공간의 안전성 확보가 주 내용인 70개 사업 중 절반인 35개는 공간이용안전과 범죄안전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임. 그 다음으로는 범죄안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 공간이용안전에 대한 사업 순으로 많으며,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음.

Ⅰ 광역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유형 Ⅰ

단위: 개, %

	계	공간이용 안전	범죄안전	공간이용 안전과 범죄안전	재난안전
사업 개수	70	9	20	35	6
비율(%)	100	12.9	28.6	50.0	8.6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

2 사업 유형별 컨설팅 주요내용

① 공간이용안전이 주가 되는 사업

공간이용의 안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정비,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정비사업 등이 포함됨. 보행로, 자전거 도로, 차도 등 이동 관련 시설이나 기존 시설물이 대상이 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나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정비의 경우 새롭게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도로, 시설물 등의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고장, 파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됨.

대부분 정해진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편임.

Ⅰ 공간이용안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사례 Ⅰ

안전 분야	대상사업 사례	
공간이용안전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유지관리 • 각종 정비사업

사업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컨설팅이 가능함.

▶ 사업대상지 선정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수행될 경우는 개선안의 도출이 쉽지 않으나, 사업 적용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심지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보행로가 사업 내용에 들어있다면 지역 생활권 내에서 이용이 많은 주 보행로가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컨설팅이 가능함. 여성들의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신설 시 이용자의 안전성

자전거도로 확충 시, 새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이 자전거 도로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함.

-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재료와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의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방지.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니터링 방안 모색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경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³⁾에 따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안전펜스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차량 과속 방지턱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보행로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음.

이 경우는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침대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역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이 더 중요한 사업임. 그러나 본 사업의 내용 안에서 모니터링이나 의견수렴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개선안으로 도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음.

이에 지역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확장하거나, 모니터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여성친화도시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함.

② 범죄안전이 주가 되는 사업

범죄에 대한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인프라 구축 사업은 조명, CCTV, 비상벨 등의 시설물

3)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 9.)에 따라 설치됨. 이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 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기준과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설치 및 개선, 유지관리 사업 등이 있으며, 모니터링 사업은 안전지도 제작이나 안전 모니터링 사업에 해당함.

안심귀가길을 조성하는 보행로 안전 사업은 조명, CCTV, 비상벨 등의 안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심귀가 도우미나 자율 방법대 등의 방법서비스가 수반되기도 함.

이 외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사업 자체의 목적은 안전이 아니지만, 위급상황에서 신고 등에 활용 가능한 가시성 높은 번호판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어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에 포함되기도 함.

Ⅰ 범죄안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사례 Ⅰ

안전 분야	대상사업 사례	
범죄안전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보안등 설치 / 유지관리 • 조도 개선 사업
	CCTV, 비상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및 비상벨 설치 •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아동, 여성)
	안전지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지도제작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 안전 모니터링
	보행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귀가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범죄안전 사업의 컨설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지 선정

조명, CCTV, 비상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과 안심귀가길 사업의 경우 적용 대상지 선정 시, 도심지 뿐 아니라 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지역 여성들의 야간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야간보행 시 안전체감도가

낮은 공간을 고려하여야 함.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인적이 드물거나 외진 지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컨설팅이 필요함.

▶ 상충되는 가치의 조율

조명이나 CCTV는 안전을 강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의 설치로 인한 가치의 충돌은 민원 발생의 우려를 초래하기도 함. 컨설팅 과정에서 지역 상황이나 주민 요구 등을 절충하여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조명의 설치에 에너지 절약이나 야간 빛 공해의 문제와 가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LED 등으로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거지에 설치할 경우 수면 방해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대안으로 빛 방향이 주택 쪽으로 향하지 않고 주거지 내 골목길 안쪽에만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컷오프형(Cut off) LED 등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빛 공해를 방지하고 야간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컷오프형 LED 등기구 설치 방안을 유도할 수 있음.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해결 등을 목적으로 시야의 사각지대 등에 설치의 필요성과 요구가 높은 시설임.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CCTV 설치 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사수렴, CCTV 설치 정보의 공지 및 안내 등이 함께 요구됨.

▶ 여성의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일반적으로 안전사업에서 여성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위치하며, 또한 공간 조성 과정에서도 여성은 공간을 이용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안전 사업 안에서 여성들이 안전활동의 주체적 참여자이면서 공간조성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안전지도를 제작하거나 지역 안전환경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활동에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함. 공간과 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과정의 참여 등 사업 내용 안에서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주체적인 참여를 모색할 수 있음.

안심귀가길 사업 내용 중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방법대나 안심귀가 도우미 활동의 경우 지역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함. 또한, 참여하는 여성들의 안전성 확보⁴⁾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성별 수혜의 분석에 있어서, 주간에 이루어지는 주민참여 활동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안전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여성들의 참여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분야의 확장 및 결과의 공유

아동안전지도나 여성안전지도의 경우 범죄안전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많으나, 간혹 공간안전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재난재해 안전을 주 내용으로 하기도 함.

지역의 요구가 높은 안전 분야를 반영하여 안전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안전 요구 조사를 권장할 수 있음. 이 결과에 따라 범죄안전 외 공간이용 안전, 재난재해안전 등 다양한 측면의 안전을 주제로 안전지도 제작 및 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예를 들면, 재난안전지도에 우리동네 대피소, 대피동선, 재해 시 위험지역 등을 지역 여성들이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여, 여성들의 재난재해 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

또한, 제작된 안전지도나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 분야 공무원 및 시민들과 공유하여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반 시설물 설치 시 안전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같이 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시설물 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안전을 고려하여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음.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쉽게 인식하고 신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번호판의 가시성 및 설치 장소를 검토할 수 있음.

4) 2인 1조로 활동하거나, 경호학과 등 안전 대응 역량이 있는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개선하는 경우도 있음.

번호판은 안전취약계층의 신고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가시성이 높아야 하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동네골목길을 중심으로 위치 인식이 수월한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이처럼 사업 자체의 내용에서 출발하는 성별 요구를 찾기에 쉽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일상생활 속 공간이용 특성 및 위급 시 필요사항으로부터 성별 요구에 대응한 개선안의 도출이 가능함.

③ 공간이용안전과 범죄안전이 모두 고려되는 사업

시설 설치·개선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매우 다양함. 단위 시설부터 건축물, 일정 지역을 범위로 하는 공간 조성 사업까지 범위도 다르고 개선의 내용도 여러가지임. 해당되는 사업의 목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차장, 화장실 등 단위 시설의 설치 및 개선
- 건축물의 설치 및 개선
-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개선
- 시장 관리 및 개선 사업
- 보행공간, 시내버스 승강장,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등 이동 시설
- 도시조성이나 환경개선, 마을만들기

대부분의 시설 설치·개선 사업은 안전성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주요한 젠더 이슈의 하나로 안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 사업으로 분류되곤 함. 특정한 시설·공간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공간이용의 안전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보행공간, 공간조성,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설계기법을 적용함. 안전한 공간이용을 위해 무장애공간설계를 적용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을 조성하거나, 범죄안전을 목적

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안전정책의 해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음.

무장애공간설계나 범죄예방환경설계는 공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두 설계방법은 유니버설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전제로 공간을 이해하고 있어 도시공간 이용과 관련된 젠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함. 여성과 남성의 공간 이용 방식이나 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손문금 외, 2013)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도시·건축공간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공간이나 시설 중심의 물리적인 안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주로 머무는 공간,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경로, 사용하고 이동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다른 도시공간 이용패턴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장미현, 2015)

Ⅰ 공간이용안전·범죄안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사례 Ⅰ

안전 분야	대상사업 사례	
공간이용안전 ·범죄안전	단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 / 확충 / 개선 •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등의 건립 및 리모델링 • 다중이용시설 설치 / 개선 / 관리 • 아동시설 설치 / 기능보강 • 장애인시설운영 • 공공건축물 신축 / 관리
	공원,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조성 • 도시공원조성 • 공원녹지조성, 공원정비 • 등산로 정비, 산림휴양시설관리 • 가로수 관리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 시장관리

안전 분야	대상사업 사례	
공간이용안전 ·범죄안전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유개승강장 설치 •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 / 관리 / 유지보수
	공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사업대상지 선정

보행환경(골목길), 안전마을 등의 사업은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진행됨. 시설·공간의 전문가들이 점검이나 자문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장소, 이용이 많은 장소 등의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대상지 선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추천지역을 포함하거나, 전문가들의 현장 점검 시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등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함께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사례가 점차 시도되고 있음. 이에,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 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여성들의 추천 장소를 대상으로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들의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 고려

안전의 대상으로 여성과 아동을 설정할 경우 여성을 쉽게 보호대상자로 간주하게 됨. 시설·공간 사업의 경우 여성의 안전성을 강조하게 되면 여성을 수동적인 공간 이용자로만 인식하거나 여성에게만 수혜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반감을

초래하기도 함.

사회문화적인 조건에 의해 돌봄의 역할이 가중되어 있는 여성들이 돌봄 대상자를 동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여성의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동이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동반한 보행 및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공간계획 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공간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것이 공간이용의 성별 요구를 반영하는 것과 연결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돌봄 관련 시설의 안전성

안전한 환경조성과 성별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이 주 사용자인 돌봄 활동 공간은 안전성의 고려 대상에서 간과되기도 함.

실내 아동 놀이시설, 수유실 등의 돌봄을 위한 시설은 자칫 여성들의 이용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여성편의시설처럼 여겨지기도 함. 그러나 돌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 영유아를 동반하여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돌봄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요구됨.

▶ 시설별 요구되는 안전성의 기준

구체적인 시설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4장의 시설·공간별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음.

④ 재난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

시설·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사업은 방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하천이나 산림 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으로 살펴볼 수 있음. 주로 정비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난 안전시설 및 공간 개선의 성별연관성을 파악하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은 상황임.

Ⅰ 재난안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사례 Ⅰ

안전 분야	대상사업 사례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 재해위험시설물관리 및 홍보 • 재해재난대비태세구축
	지역정비, 재해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 하천관리, 하천환경정비 •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공간 사업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지점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성별 고른 접근성 확보

재난재해의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 관리 사업의 내용에는 재난안전 시설물이나 재난예방 내용에 대한 홍보가 포함되기도 함.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은 재난대처 능력의 차이이며, 이는 재난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성별 접근성 차이,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차이 등에 기인함.(강희영 외, 2015)

이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 대피 위치 및 방법 등 홍보 내용이 성별로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요구됨.

여성들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부착⁵⁾, 고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큰 글씨와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된 홍보물 제작 등을 개선안으로 도출할 수 있음.

5) 맘 카페나 등 여성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례도 있음.

▶ 대상지 내 포함된 보행로 및 산책로의 안전성 고려

댐 주변이나 하천 등의 정비 사업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나 보행로로 이용하는 공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음 4장의 시설·공간별 컨설팅 가이드라인 중 보행로나 산책로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가능함.

다만, 실제 이용은 보행로나 산책로일지라도 공간계획 상 도로나 산책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 보행로나 산책로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이에 사업담당자와 논의하여 최소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Ⅲ. 시설·공간별 안전 컨설팅 가이드라인



- 1. 주차장
- 2. 화장실
- 3. 공원
- 4. 건축물
- 5. 보행로
- 6. 버스 승강장



Ⅲ. 시설·공간별 안전 컨설팅 가이드라인

본 시설 가이드라인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빈도가 높은 시설·공간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등 안전성 이외의 기준은 지역별 조건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적 기준과 더불어 서울시, 인천 부평구, 익산시, 시흥시, 아산시 등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1 주차장

주차장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시설임. 승용차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공간이며 여성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함.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은 승용차의 승하차 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 법령에 명시된 기준은 없으나, 지역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배려주차장이나 교통약자 주차장, 여성친화주차장 등⁶⁾에 대한 조례 및 기준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배려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6)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명칭의 경우, 여성들이 주차를 못하거나 운전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배려주차장은 여성들의 영유아 동반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이용 가능함.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배려주차장의 경우 보행약자의 특성을 지니는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성, 이용률이 높은 여성의 안전체감도를 고려하여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함.

※ 지역에 따라 조례에 배려주차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거나, 배려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음.7)

Ⅰ 배려주차장 사례 - 시흥시 Ⅰ



출처: 남수현 외, 2014

7) 지역 상황에 따라 배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전체주차대수의 규모를 제시하기도 함. 아산시의 경우 주차장 조례 제19조의4(교통약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

Ⅰ 주차장 안전성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배려 주차장	배려주차장 설치	배려주차장을 전체주차대수의 10~20% 이상 확보하고 확장형(2.5×5m)으로 설치.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일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1대로 간주함. ⁸⁾ 10% 이상을 필수, 20%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배려주차장 위치	주변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와 인접한 곳에 배려주차장 설치 권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의 30~50m 이내에 설치	주출입구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함. 배려주차장은 건축법상 피난 거리 기준을 참조하여 30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차장 전반	주차장 내 보행 안전 통로 확보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출입문까지 0.9m 이상 유효 폭 ⁹⁾ 으로 연속적으로 설치. 단차가 있을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 ¹⁰⁾ 를 설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주차장 내 적정 조도	주차장로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조도값이 실내 100lux 이상, 실외 30lux 이상이 되도록 함. (실내 130lux 이상, 실외 60lux 이상은 권장사항임) ¹¹⁾	KSA 3011 조도기준 ¹²⁾ [표5 교통]의 주차장 및 실내주차장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주차장 내 관찰 및 경보 시스템	배려주차구역의 모든 구간(주차구역의 모든 구간 권장)을 관찰할 수 있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폰 설치	최소한 배려주차장은 CCTV, 비상벨, 인터폰이 필수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사항으로 모든 주차구간의 안전성 확보를 제안할 수 있음. 특히, 시야의 사각지대에는 CCTV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필요함.

- 8) 시흥시의 경우는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아산시의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 적용함.
 9) 0.9m는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있는 폭 0.875m에 근거함.
 10) 단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 12. 경사로 - 나. 기울기 기준에 근거함.
 11) KSA 조도기준은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간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에너지 절감 등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조도값이 낮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현 기준보다 한 단계 밝은 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12) KSA 조도기준은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간값과 최~대값을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치, 형태, 재료, 경보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수 있음. 공중화장실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설치 대상 위치 선정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는 화장실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것이며, 남녀 화장실이 인접할 경우 출입구에서 시선이 마주하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함. 남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고려하여 출입구에서 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

Ⅰ 화장실 안전성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위치	공중화장실 위치	이용이 많고 접근이 편하며, 밝고 외지지 않은 곳에 설치. 화장실 주변을 주변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함.	
출입문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함. 남자 화장실은 외부에서 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재료	화장실 내 안전한 바닥재	미끄럼방지용 타일을 사용하여 마감함. 전체 바닥면에 물기가 없도록 바닥면 배수시설 설치. ¹³⁾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지역에 해당 기준이 있을 경우, 컨설팅 과정에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함. 에너지 절감 등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조도값이 낮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조금 더 밝은 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1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가. 일반사항 - (2)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14) 지자체의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중 6-8cm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음.

15) BF 인증은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비상시에 구출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문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장애인들이 내부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BF 인증을 적용하는 시설일 경우, BF 적용 기준과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위부스 출입문 기준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음.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단위 부스 안전성	안전한 단위 부스 출입문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위부스 출입문의 상하부에 적절한 틈새를 바닥으로부터 6~10cm 범위로 설치. ¹⁴⁾	단위부스 외부에서 서있는 상태로 단위부스 내부가 들여 다보이지 않아야 함.
	안전한 단위 부스 잠금장치	모든 잠금장치가 고장이 없으며 외부로부터 쉽게 열 수 없도록 설치	단위부스 안의 이용자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 에서는 쉽게 개폐가 가능 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¹⁵⁾
범죄 안전	화장실 내 방범 및 경보장치	화장실 내 찾기 쉬운 장소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 모든 단위 부스 내 비상벨 설치 권장.	비상벨의 경우 경보만 울리 거나 외부로 경보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가능 하다면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 회사,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 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CTV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할 수 있음.	화장실 내 CCTV의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설치를 지양함. 범죄 등의 방지 및 사후 대응을 고려하여 출입구 인근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함.
	화장실 적정 조도	실내의 조도는 100lux 이상으로 유지함.(150lux 이상 권장)	KSA 3011 조도기준 [표7 사무실] ¹⁶⁾ 의 서비스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 기준을 준용 하여 적용함.

16) KSA 조도기준 중 [표3 공공시설]의 서비스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의 기준은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도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사무실의 해당 공간 기준을 참조하여 중간값과 최대값을 적용하였음.

3 | 공원

공원은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¹⁷⁾이 있으며, 이 중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포함됨. 본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공원의 규모와 설치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음.

공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산책로,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과 공원 전반의 범죄안전 관련 항목을 살펴볼 수 있음. 이 중 주차장과 화장실의 경우 본 장의 주차장, 화장실 관련 기준을 참조하도록 함.

산책로는 공원에 설치된 보행로로 휴식이나 건강을 목적으로 느린 속도로 거닐 수 있도록 설치된 길을 일컫음.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재질 및 마감,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 요구됨.

공원 전반의 안전성은 취약지역의 발생을 막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의 적용이 필요함. CCTV 및 비상벨 설치, 시야의 확보, 조도의 확보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Ⅰ 공원 안전성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산책로	산책로 유효폭 ¹⁸⁾	유효폭 1.5m 이상 필수. ¹⁹⁾ 생활권 공원의 경우 유효폭 3.0m 이상, 주제공원의 경우 유효폭 4.0m 이상 권장.	최소 1.5m 이상의 유효폭 확보가 필요함.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의 권장 유효폭은 아산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으로, 지역별 조건과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17)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을 말하며,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포함됨.

18)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산책로	산책로의 재질 및 마감	산책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²⁰⁾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재 사용 권장.	보도블럭 등의 이음면이 넓어질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의 이동, 하이힐을 신은 사람, 발이 작은 영유아의 보행 등에 불편함이 커짐.
	산책로의 기울기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산책로는 1/18 이하로 설치함. 1/20 이하 권장. ²¹⁾	
경사로	공원 내 경사로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 이하가 되도록 권장함. ²²⁾	산책로가 아닌 일반 보행로에 경사로가 있을 경우 적용함.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공원주차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비상벨 및 CCTV 설치.	공원 내 설치된 CCTV는 1개소 이상의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비추도록 할 것을 권장함.
	시야 확보	낮은 관목으로 시야의 차단을 방지하고(은닉장소 제거), 수목의 하단부 전지작업으로 가시권 확보.	CPTED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방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함.
	외부 조도	주요 보행로 및 시설의 가로등은 20m 이내 설치 또는 15~30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가로등 설치 간격이나 조도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활용하도록 함. 조도의 경우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시설]의 공원과 주된 장소의 기준을 준용함. ²³⁾

1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2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라.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2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1/18의 기준을 적용하며, 산책로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기준 1/20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함.

2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2. 경사로 - 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함.

23) 공원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도가 높은 장소이며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장소임. 이에 KSA 조도 기준 중 공원의 최대값(15lux)과 주된 장소의 최대값(30lux)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진입부터 내부시설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 건축물의 진입부

건축물의 진입부는 대지 내 보행로, 주차장, 주 출입구까지를 포함함.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입부가 계획되면 특정한 사람들의 시설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대지 내 보행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주 출입구까지 이동이 이루어지는 외부 보행로를 의미함.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대지 내 보행로의 형태와 범주로부터 안전성 확보 방안을 살펴볼 수 있음.

주 출입구는 건물로 진입하는 출입문이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함. 안전한 진출입을 위한 주 출입구의 형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은 본 장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Ⅰ 건축물 진입부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대지 내 보행로	보행로 유효폭 ²⁴⁾	유효폭 1.5m-2.0m 이상 권장 ²⁵⁾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대지 경계선 내부 보행자로는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²⁶⁾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피할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턱 낮추기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24)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대지 내 보행로	보행로의 재질 및 마감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²⁷⁾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재 사용 권장.	
	보행로의 기울기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로는 1/18 이하로 설치함. ²⁸⁾ 가능하면 평지 혹은 1/24 이하 권장.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보행로 내 단차 및 장애물	보행로 내 단차는 2cm 이하이며, 가로수 가지치기 높이, 가로등 및 간판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2.1m 이상이어야 함. ²⁹⁾	보행로 내 가로수나 가로등, 볼라드, 맨홀, 점검구 등의 시설물로 인한 보행장애가 없도록 컨설팅이 요구됨.
	보행로의 조도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40lux 이상, 60lux 이상은 권장.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 시설]의 건물 외부 기준을 중간 값과 최대값을 준용함.
주 출입구	주 출입구 턱 낮추기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을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 (경사로 1/12 이하, 유효폭 1.2m이상) 설치 ³⁰⁾	가능하면 단차없이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입문의 형태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유효폭 0.8m 이상의 한방향 개폐 여단이 문을 설치함. ³¹⁾ 유효폭 1.0m 이상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 설치할 수 있음.	회전문의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하여야 함. 회전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하여야 함.
	출입문 전후 활동공간	출입문 전후면에 활동공간을 0.8-1.0m 이상 확보 ³²⁾	유모차와 휠체어가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도록 출입문 전후에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가방을 든 사람(875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

2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2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2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라.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2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나. 기울기 내용에 근거하여 1/18을 기준으로 함.

2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마. 보행장애물 기준에 근거함.

3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가. 턱낮추기 / 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3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의

나. 물의 내부시설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의 내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과 난간, 승강기의 안전한 형태와 구조에 대한 기준, 건축물 내부 CCTV 및 비상벨 설치 기준 등의 검토가 필요함.

위생시설에 해당하는 화장실은 본 장의 화장실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함.

Ⅰ 건축물 내부시설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안내판	안내 정보의 제공	건물내부에 가독성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알아보기 쉽도록 비상대피로가 표시되어야 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하며 ³³⁾ , 아동과 고령자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래픽으로 대피로가 표현되어야 함.
복도	복도의 유효폭 ³⁴⁾	복도의 유효폭을 1.2m 이상 (편복도 기준) 또는 1.8m 이상 (중복도 기준) 확보. ³⁵⁾	
	복도의 바닥마감	모든 통로의 바닥면은 높이 차이가 없이 평탄해야 하며, 잘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³⁶⁾	바닥표면은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함.
	복도의 조도	복도 내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조도 값이 100lux-150lux 이상 되도록 함.	KSA 3011 조도기준 [표3 공공 시설] 중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의 중간값과 최대값 기준을 준용함.

내용 중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기준에 근거함.

- 3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는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본 기준에서는 유효거리를 0.8-1.0m로 하여 전후면 모두 확보하도록 제시함.
- 3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기준에 근거함.
- 34)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
- 3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가. 유효폭의 기준은 편복도 1.2m, 중복도 1.5m임. 이 중 중복도 기준을 조금 강화하여 제안함.
- 3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라.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계단과 난간	계단의 재료	주 계단의 디딤판 끝단을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함. ³⁷⁾	계단의 디딤판은 발로 디디기 위한 수평면을 의미함. 가능하면 모든 계단의 끝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계단의 난간	주 계단에 아동을 위한 하부 손잡이를 높이 0.65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³⁸⁾	일반적인 계단 난간은 0.8-0.9m 높이에 설치됨. 아동이나 키가 작은 사람 등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함.
승강기	승강기의 안전성	내부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부를 투명창으로 설치 ³⁹⁾ (출입문의 1/2 이상 권장)하고, 승강기 내부에 보안용 CCTV설치함.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건축물 내부의 사각지대(피난 계단, 부출입문) 등 곳곳에 방법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3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마.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3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다. 손잡이 기준 중 이중 난간 설치 시 하부 난간 기준을 적용함.

3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9. 장애인용 승강기 - 라. 기타 설비 기준에 의하면,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건축물의 돌봄시설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실내 놀이시설이나 수유실 등의 돌봄공간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함. 실내 놀이시설의 안전성은 영유아들의 안전한 이용, 보호자들이 관찰 가능한 구조에 대한 내용, 수유실의 안전성은 수유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수유실 이용자의 위급상황 대비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Ⅰ 건축물 돌봄시설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실내 놀이 시설	실내 놀이시설 출입문	개폐 시 영아들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안전장치를 설치함.	
	실내 놀이시설 바닥재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 놀이가 가능하도록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절한 바닥재를 고려함	
	실내 놀이시설의 보호자 관찰	보호자 관찰이 가능한 문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수유실	수유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수유실은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수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 벽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함	수유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공간이 분리되도록 함.
	수유실의 안전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벨을 설치함.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를 설치할 수 있음.	

보행로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로의 형태와 범죄안전에 관련된 기준을 포함함. 특히,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등 주요 보행공간의 경우 안전의 확보가 필수적임. 따라서 보행로의 기준은 모든 보행로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주요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필요함.

보행로의 형태는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 유효폭,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보행공간의 재질 및 마감, 보행공간의 기울기, 단차 및 보행장애물 관련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범죄안전에 대해서는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 적정조도, 조명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함.

조명 설치, 조도 개선 등의 사업 시에 야간 조도의 확보가 필요한 보행로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횡단보도 주변 지역이 조명 설치 및 개선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함.

Ⅰ 보행로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보행로 형태	설치 유효폭 ⁴⁰⁾	주 보행공간은 유모차 및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1.5m 이상 필수, 2.0m 이상 권장 ⁴¹⁾	

40)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4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보행로 형태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보행공간은 연석·울타리 등으로 보행로의 차도가 분리되어야 하며, 공작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⁴²⁾	
	보행공간의 재질 및 마감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2mm 이하로 설치. ⁴³⁾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권장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아동,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보도의 틈새로 인해 보행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보행공간 기울기	보행로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함.	
	단차 및 보행장애물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단차 제거. 경사면으로 단차를 제거한 부분의 폭은 90cm 이상, 기울기는 최소 1/12 이하로 할 것을 권장. ⁴⁴⁾	
범죄 안전	야간 적정조도 유지	주 보행로는 어둡지 않도록 야간 적정조도를 확보함.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된 조도값이 20-30lux 이상이 되도록 함. ⁴⁵⁾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의 도로 수송 기관 중 도시 정류장 기준을 준용함.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도 기준의 적용에 융통성이 필요함.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 현재 지역에서 활용하는 조도를 고려하여 주 보행로의 조도를 조금 더 밝게 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4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4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라.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4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 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45) 지역에 따라 조례나 도로 조명 기준에 차도와 보행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차도의 조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차도의 기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로의 밝기로는 충분치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주 보행로의 경우 기준의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조도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거나, 차도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보행로 조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범죄 안전	조명 설치	차도와 보행로는 각각 조도를 확보하도록 함.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도 조명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함.	
	범죄예방 CCTV 설치	범죄우려지역, 대중교통 승강장 주변, 시야의 차단지역 및 외진 곳 등에 CCTV설치.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심리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보행로가 개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시설물 및 조경은 시야 확보에 용이하고 사각지대를 없앴.	CPTED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방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함.

버스 승강장 설치의 경우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범죄안전에 대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버스 승강장 주변이 개방적인 공간이 되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유개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벽면재료를 투시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야간에 버스 승하차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자체 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 가로등을 활용하여 조도의 확보가 필요함.

Ⅰ 버스 승강장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Ⅰ

구분	항목	시설 가이드라인	비고
버스 정류장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확보	수직가림막이 있는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동 및 대기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시야 개방성 확보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 시설물,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 내외부로의 시야 확보를 위해 투시성 있는 벽면재료 사용.	시각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 시야의 차폐 요소를 지양하고, 버스 정류장과 주변이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버스 정류장의 조도 확보	버스정류장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야간 조도를 확보.	

IV.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컨설팅 참고사항



1. 컨설팅 시점의 고려
2. 기초자료로서 성별 통계의 구축
3. 컨설팅 대상 사업으로 안전 분야의 확대



Ⅳ. 시설·공간 안전사업의 컨설팅 시 참고사항

1 컨설팅 시점의 고려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나 지역단위 공간사업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정책개선안의 도출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일정과 공간사업의 진행단계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해당 사업의 진행 사항에 따른 컨설팅 가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해당 사업이 기획단계라면, 설계공모나 용역업체에 전달되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함.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를 추가하도록 제시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컨설팅 내용 예시

- 과업 필요성에 '주민이용이 많은 ○○○○시설로서 여성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명시
- 과업의 범위에 '성별 인구 구성 및 성별 요구 조사', '여성친화적 관점의 우수시설 사례 조사', '여성친화적 공간조성 계획' 등을 필요에 따라 포함
- 배치 및 평면계획에 '이용자의 성별 이용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시설 설치', '돌봄 시설(수유실, 유모차 보관대, 아동일시돌봄공간 등)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계획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 제시
- 과업의 진행 사항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전문가의 자문 활용',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의 참조' 등 권장

계획설계안이 작성되었다면 설계 내용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공간계획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이 요구됨. 또한 실시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성인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계획안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음. 이 경우 계획된 공간계획 안에서 추가로 설치 가능한 부분을 논의하고, 보완하도록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함.

2 기초자료로서 성별 통계의 구축

시설·공간 사업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안전정책의 경우 성별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임. 이에 따라 분석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성별 통계가 미흡한 상황임.

안전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적관련 사항에 대한 통계의 구축, 성별에 따른 공간 이용 특성이 개선안에 포함되어야 함.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간 이용 특성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임. 도시 지역, 도농 복합지역, 도어 복합지역, 도서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시설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지닐 수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성별에 따른 공간이용 특성에 대한 조사와 통계의 활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3 컨설팅 대상 사업으로 안전 분야의 확대

지역별로 안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은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안전의 분야나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제한적임.

모든 안전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부족, 성별통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성별연관성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임. 본 가이드라인 또한 안전성을 주요 이슈로 다루는 시설·공간 사업에 대한 내용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는 자칫 여성과 관련된 안전 분야를 분석평가가 이루어지는 안전 사업의 범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도시안전의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강현미·박소현(2008) 구릉지 아파트단지의 보행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보행약자의 이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제4회 우수졸업논문전 수상논문 개요집 4(1), 195-198
- 강희영(2015) '여성, 안전한가?'. 2015여성가족리포트 2015 제2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강희영, 이유화.(2015) 포괄적 안전 개념에서 본 서울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재민·배경자·남상오·한진영(2012), 『여성이 안전한 공공원룸주택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남수현·장미현·조연숙·최정선·남희경(20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부평구(2013).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인천광역시 부평구
- 서영주·이재림·이순희·이주나·안재희·장명선·문은영·황치석·김은미(2009),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손문금·이선영·장미현(2013), 『2030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 「서울시민의 안전인식과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 유희정·김양희·이미원·최진·문희영(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 이명주·이승훈·최선민(2011),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미현(2015). 도시·건축공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이화젠더법학: v.7 n.2 (113-145)
- 장미현·최정선·유희재(2016),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아산시.
- 장미현(2016), '여성친화도시 공간 안전 사업에 대한 제언', 제16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미혜·윤덕경·이인선(2013),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V): 여아 및 여성 안전 관련 정책점검 및 향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인용.
-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최유진·문희영·장미현(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 국민안전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통합지침」
-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 Dame, T. and Grant, S. (2002), Women and Community Safety: a Resource book on planning for safer communities. British Columbia: Vancouver Foundation.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

2017년 1월 인쇄

2017년 1월 발행

발행인 : 강은희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172

인쇄처 : 중앙기획·인쇄
전화/02-736-2866~7
